

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구성결의안(안)

1. 소위원회 구성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2021.1.12., 2022.1.13.시행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인사권 독립,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, 정례회 운영 사항 자율화 등 의회 역량 및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변혁을 앞두고 있음.
- 중앙정부와 집행부로부터 권한을 원만하게 이양 받고,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치법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‘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’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.

2. 소위원회 구성 : 6명

위원장	위원
권영희	김경우, 김호평, 송재혁, 정재웅, 추승우

3. 소위원회 활동 기간

- 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소위원회 구성일부터 6개월로 함
- 조사 일정: 붙임 1. 참조

4. 소위원회 활동 범위

- 전부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중 의회와 관련된 내용 분석
- 관련 의회 조례 및 규칙 제·개정(안) 마련
- 기타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붙임 1

조 사 일 정(안)

일 시	내 용	비 고
2021. 4. 14. ~ 2021. 4. 30.	▶ 활동 계획 수립 ▶ 제1차 회의 ▶ 자료 분석	제300회 임시회 (4. 14. ~ 5. 4.)
2021. 5. 1. ~ 2021. 5. 31.	▶ 제2차 회의 ▶ 관련 부서 회의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마련	
2021. 6. 1. ~ 2021. 6. 30.	▶ 제3차 회의 ▶ 관련 부서 회의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마련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심의·처리	제301회 정례회 (6. 10. ~ 6. 30.)
2021. 7. 1. ~ 2021. 7. 31.	▶ 제4차 회의 ▶ 관련 부서 회의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마련	
2021. 8. 1. ~ 2021. 8. 30.	▶ 제5차 회의 ▶ 관련 부서 회의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마련	
2021. 9. 1. ~ 2021. 10. 13.	▶ 제6차 회의 ▶ 관련 부서 회의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마련 ▶ 자치법규 제·개정(안) 심의·처리 ▶ 평가 및 소위원회 활동 정리	제302회 임시회 (8. 27. ~ 9. 10.)